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인”이라 한다)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2.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서(토지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사후관리 의무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사후관리 매립시설	⑥ 상호(명칭)	⑦ 매립폐기물 종류	
	⑧ 허가·승인·신고일	⑨ 허가·승인·신고 면적(㎡)	
	⑩ 소재지		
	⑪ 사용종료일	⑫ 최근 사후관리 정기검사일	
	⑬ 상부토지이용현황		
승계사유	[] 양수나 인수 [] 합병이나 분할 [] 상속		

「폐기물관리법」 제5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에 따른 의무를 승계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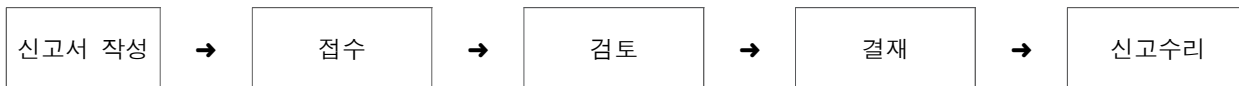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신고인 첨부서류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2.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서(토지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사후관리 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①란부터 ⑤란까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하는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⑥란부터 ⑬란까지는 사후관리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내용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1조의2(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인”이라 한다)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 <u>1.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u> <u>2.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u> <u>3.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서(토지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u> <u>4.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u>

5. 사후관리 의무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